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3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 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 개정안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둔다.</u>

- 「형사소송법」 제260조¹⁾ 및 제262조²⁾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

- 1)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 2)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고,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재정신청사건 관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재정신청 건수 대비 공소제기결정 건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그 인용율이 극히 저조한 바,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둬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를 전문화·내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인원 및 공소제기 결정 인원 수 >

연도	구분	접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공소제기결정 (공소제기건수 비율)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
2020년		28,883	167(0.57%)	28,093	232	28,492
2021년		17,295	116(0.67%)	18,556	140	18,812
2022년		14,468	86(0.59%)	12,415	136	12,637
2023년		21,139	121(0.57%)	18,378	178	18,677
2024년		25,353	124(0.48%)	29,536	114	29,774
2025년 1월 ~ 6월		8,937	30(0.33%)	7,799	131	7,960
합계		116,075	644(0.55%)			

자료 : 법원행정처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개정안의 심사 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전담 재판부에 대한 현행 제도 및 그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전담재판부에 대한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고등법원의 경우 부(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건과 관련한 전문재판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783호)에서 각급 법원에 따라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등 각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신청사건을 관할하는 각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고등법원별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현황 >

(기준일자: 2025. 10. 15. 현재)

법원	전담재판부 여부	전담재판부 개수	담당 재판부	비고
서울고등법원	○	1	제30형사부	
대전고등법원	X	0		
대구고등법원	○	2	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부산고등법원	○	2	제3형사부 제4형사부	이외 2개 형사부에서

				일부 재정신청 담당
광주고등법원	X	0		
수원고등법원	X	0		

자료 : 법원행정처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³⁾ 및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⁴⁾에서는 전담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담재판부를 재판예규에 따라 운영하는 원칙적인 취지는 해당 법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속 법관의 수, 업무량, 업무 분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담재판부의 설치 여부와 규모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엄단이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 및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전담 재판부의 지정 또는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원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사법적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것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4)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원의 자율성 존중 및 사법행정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라는 현행법 체계의 취지와 함께 다른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하여 전문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행정 실무상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전담재판부의 설치하는 사건의 경우는 사실 인정, 분쟁 내용 및 사안의 파악을 위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피해자 특성의 이해에 기반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정신청전담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